

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『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』 제22조의7(판매소의 지정 취소) 및 제22조의8(의견제출)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: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7. 14. ~ 2026. 7. 28. (14일)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공고대상: CU곡반정소망점, 세븐일레븐중앙점, 엠플러스마트, 한누리편의점 등 4개소
【붙임 참고】
5. 공고내용: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소가 멸실하여 해당 판매소를 직권으로 지정 취소함
6. 문 의 처: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청소 담당자(☎ 031-5191-6651)

※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.

2026. 7. 14.

곡 선 동

